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714

발의연월일: 2021. 3. 11.

발 의 자:조오섭·문진석·박홍근

송갑석 · 안민석 · 양향자

윤영덕 • 이규민 • 이병훈

이수진 · 이용빈 · 인재근

민형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취득·개발, 도시 개발·정비, 주택 건설·공급·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주거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해왔음.

그러나 최근 공사 직원 일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차명 거래하며, 희귀작 물을 수목하여 토지보상금을 과도하게 수렁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시세차익을 통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이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이 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큼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며, 공사 임직원 및 친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 제30조 신설 등).

법률 제 호

한국주택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임직원등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등) ① 공사는 매년 임직원 및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될 경우 제1항 에 따른 조사 내역 중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 내 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범위, 조사 대상 기간, 조사 방법・절차 및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징계처분"을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따른 특별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거래하도록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몰수·추징) 제2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의2(임직원등의 부동산 거
	래 내역 조사등) ① 공사는 매
	년 임직원 및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
	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공주택 특별
	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
	구 또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등으로 지
	정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내역 중 지정 대상 지역에 해
	당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
	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자
	의 범위, 조사 대상 기간, 조사
	방법・절차 및 기타 세부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생 략)	금지)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업
	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
	용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

② 공사는 <u>제1항</u>을 위반한 임 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u>징계처분</u>을 행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① · ② (생 략)

<신 설>

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거래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u>제1항 및 제2항</u>-----
- -----<u>징계처분 및 형사고발</u>-
- 제2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 또는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 또는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
<u> <신 설></u>	④ 제3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
	항의 형에 처한다.
<u> <신 설></u>	제30조(몰수·추징) 제2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
	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u>다.</u>